

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위촉된 위원의 임기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자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“사회복지시설”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노인·장애인·아동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.

2.“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”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.

제3조(설치 등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·위치 및 그 주요 기능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적용범위)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조(이용자의 자격)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자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, 부랑인 보호시설은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으로 한다. ②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다.

1.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
2.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

3.위탁기간

4.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수탁자 선정)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시설관리 등)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중이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중이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설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여성정책관(여성개발담당관)란의 시설명 란중 “○시청 어린이집·보육정보센터”를 “○시청 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표의 같은 란중 “○시립아동복지시설”, “-시립 소년의 집”, “-시립동부아동상담소”, “○시립 영보자애원”은 이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표의 보건복지국(사회복지과)란, 보건복지국(노인복지과)란 및 보건복지국(장애인복지과)란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.

②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별표의 여성정책관(여성개발담당관)란의 시설명란 중 “○시립영보자애원 관리운영”을 삭제하고, 같은표 같은란 중 “○서울시청어린이집·보육정보센터 관리운영”을 “○시청

어린이집 관리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표의 같은란 중 “○시립소년의 집 관리운영”, “○시립동부아동상담소 관리운영”은 각각 이를 삭제하며, 같은표의 보건복지국(사회복지과), 보건복지국(노인복지과)란 및 보건복지국(장애인복지과)란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.

【별 표】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(제3조 관련)

주관국(과)	시 설 명	위 치	주 요 기 능
여성정책관 (여성정책 담당관)	○시립영보자애원 ○시립소년의 집 ○시립동부아동상담소 ○시립부녀보호소 ○시립아동상담소 ○시립보육정보센터	경기 용인 이동 목리464 은평구 응암동 42-5 동대문구 장안동 329-1 강남구 수서동 산4-1 강남구 수서동 산4-1 중구 서소문동 5-1외	부랑인(여) 수용보호 요보호아동 수용보호 요보호아동상담·치료·일시보호 부랑인(여)일시수용보호 요보호아동상담·치료·일시보호 보육관련정보 제공
보건복지국 (사회복지과)	○시립은평의마을 ○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	은평구 구산동 산61-8 양천구 신정2동 1278-1외 2	부랑인(남) 수용·보호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
보건복지국 (노인복지과)	○시립노인요양원 ○시립양로원 ○시립엘리트노인요양원 ○시립중계노인복지관 ○시립엘리트경로원 ○시립남부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북부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○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	노원구 상계동 산51 강동구 고덕동 317-23 경기 군포 산본동 1100 노원구 중계동 501-1 경기 군포 산본동 1100 관악구 봉천동 726-3 노원구 하계동 170-1 구로구 구로동 25-1외3 중랑구 면목동 178-8 성북구 종암동 66-25 은평구 진관외동 산140 강서구 등촌동 661-4 마포구 창전동 140 강북구 수유동 122-3 성동구 마장동 798-1 금천구 시흥동 558-1외11 도봉구 쌍문동 19-12 용산구 한남동 108-1외5 동작구 대방동 335-10 동대문구 청량리동 11-1 서대문구 천연동 117-3외2 광진구 군자동 364-16 강동구 명일동 48-10	요보호 저소득노인 수용보호 " " " " 노인들에 대한 취미·여가·건강관리 등의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 "

주관국(과)	시 설 명	위 치	주 요 기 능
보건복지국 (장애인 복지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○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○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○ 시립상이군경복지관 ○ 시립맹인복지회관 ○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○ 시립곰두리체육센터 ○ 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동구 고덕동 317-24 동작구 신대방동 395 노원구 상계동 771 노원구 상계동 771 노원구 상계동 771 노원구 상계동 771 노원구 상계동 771 송파구 오금동 51 동작구 신대방동 395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운영 " "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정신지체인 복지프로그램 운영